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 삭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주체 정비(안 제4조)
- 나. 시설물(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임기 등의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 3)
- 라.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p>□ 해당조항 :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 해당조항 :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p>	<p>□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p>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579호

가) 예고기간: 2023. 4. 4. ~ 2023. 4.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시행)”을 “(시설물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이 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4(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제목“(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사용료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 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단체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p>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p>

<신 설>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이 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신 설>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마
을이나 어촌계 등 단체가 시설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4(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
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관리자가 수행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 내용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대출이자율·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